

최적의 절세 타이밍을 잡아라

자산가치 하락기, 증여에는 골든타임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주식을 소유한 이들은 울상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줄여 상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산가치의 하락기에 무엇을 눈 여겨 봐야 할지 알아보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입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평가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낮게 평가된 주식이나 펀드, 채권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낮은 평가금액으로 인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향후에 수익률이 회복되었을 때 그 과실이 증여받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자산이전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상품별로 세법상 평가방법을 살펴보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전문위원
sanghyoeklee@hanafn.com

▶ **학력·자격증**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2008년(45회) 세무사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무전문위원

▶ **기타 활동**
2010~2014년 복인천세무서 재산세과 및 김포세무서 조사과 근무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등

펀드, ELS 등 간접투자상품은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

증여재산이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간접투자자산운용방법에 따른 간접투자상품인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 또는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만약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손실이 났는데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더라도 수익은 증여받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투자한 ELS가 60% 손실이 발생하여 평가금액이 2,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따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녀의 증여재산공제한도가 2,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받은 ELS가 만기 때 주가가 회복되어 20% 수익이 나게 되면 6,000만원을 자녀가 상환받게 되어도 추가적인 증세 부담은 없게 된다.

손실이 발생한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증여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은 온전히 자녀나 배우자의 몫이 되며, 증가한 금액만큼 자금출처로도 활용할 수 있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어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일 당시의 평가금액이 된다.

상장주식은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

주가가 하락하는 주가 조정기에는 어김없이 최대주주 일가의 증여가 있었다는 내용이 공시로 발표된다. 주가가 낮을 때를 이용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왜



냐하면 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달, 총 4개월의 증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므로,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취소 후에 다시 증여시기를 모색할 수 있다.

국·공채 등 채권은 최종시세가액과 증여 전 2개월간 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채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해당된다. 증여일 이전 2개월간의 유가증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증여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 (2) 그 외의 국채 등 :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도

위의 방법을 준용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부동산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 증여의 장점이 의외로 많다. 먼저 금융상품은 부동산에 비해 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증여 시 재산평가로 과세당국과 분쟁이 생길 여지도 적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동산과는 달리 증여를 실행할 때 취득세의 부담이 없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보자. ^ㄴ

summary

- ① 펀드, ELS 등 간접투자상품은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증가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다.
- ③ 국·공채 등 채권은 최종시세가액과 증여 전 2개월간 평균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④ 금융상품의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이 쉽게 확인되며, 취득세 등의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주1) 상속증여세과-25(2014.02.06)